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667
----------	-------

발의연월일 : 2026. 4. 28.

발 의 자 : 유상범 · 박충권 · 송석준
임이자 · 장동혁 · 이소희
구자근 · 조정훈 · 엄태영
곽규택 · 박성민 · 조배숙
의원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잠정조치 제도를 두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실제 하급심 판결 분석에 따르면, 스톱킹 사건의 1심 재판 기간은 평균 약 79일에 이르고, 90일 이상 소요되는 사건도 상당수 존재하여, 현행 잠정조치 기간(최대 9개월)만으로는 재판 전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충분히 담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잠정조치 종료 이후 스톱킹행위가 재개되는 사례까지 확인되고 있음.

또한, 잠정조치 위반율이 약 7% 수준에 이르는 등 조치 위반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조치 위반 상태에서 이루어진 스톱킹범죄를 별도로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범죄의 반복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잠정조치 기간을 재판 확정 시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를 위반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스토킹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방지하고 재범 억제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7항 단서 신설, 제18조의2 신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형사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잠정조치를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연장은 형사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할 수 있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가중 스톱킹범죄) 제4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상태에서 제18조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스톱킹범죄를 저지른 사람부터 적용한다.

